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9. 25 선고 2020가단104431(본소), 2020가단5824(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김재원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이종환

변 론 종 결 2020. 8. 21.

판 결 선 고 2020. 9. 25.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1,508,67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총 77,308,672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15,8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61,508,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1)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증여한 것이다.
- 2) 피고는 원고 대신 원고의 가족을 부양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7,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토지 매수를 위해 피고가 지출한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합계 7,7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바,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하면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15,4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2. 판단

### 가. 본소 청구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7. 15. 약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20. 4. 1.자 원고와의 대화에서 2,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했는데 다른 곳에 투자하여 손실을 봐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부양의무를 피고가 대신 이행하였다거나 원고 대신 토지매수대금 중 500만 원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 및 피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미연

별지